

瑞山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總務委員會
2000. 3. 22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2000. 3. 14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2000. 3. 14
- 라. 上程日字 : 2000. 3. 22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 : 稅務課長 安光來)

가. 提案理由

-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감면규정중 수익성이 높고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과세 전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장애인차량의 감면대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4조).
-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함(안 제10조).

- 서민층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등록기준을 완화함(안 제12조).
- 수익성이 높고 도심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2001년부터 과세 전환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재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함과 동시
- 앞으로 도심교통난 유발과 수익성이 높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지방세과세로 전환코자하는 사항으로
-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므로 본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查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140 호
의결년월일	2000. 3. . (제 회)

서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0. 3. 14

서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2000. 3. 1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감면 규정 중 수익성이 높고 도심 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과세 전환하는 한편, 기타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장애인차량의 감면대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4조).
-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 등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함(안 제10조).
- 서민층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등록기준을 완화함(안 제12조).
- 수익성이 높고 도심교통난을 유발하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2001년부터 과세 전환함(안 제15조 및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세정13401 - 169)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0. 1.10 ~ 2000. 1. 30 (20일간)

○ 예고결과 : 특이사항 없음

라. 합의·협의 :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 교통분야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하는”을 “감면신청 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4조의 제목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한”을 “감면 신청한”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9조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2조제1항 본문중 “5세대이상”을 “2세대이상”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동법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 “동법 제9조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를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의 폐지 규정은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있는 중 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삭 제></p> <p>②-----</p> <p>-----</p> <p>-----</p> <p>-----</p> <p>-----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p> <p>-----감면신청 하는-----</p> <p>-----</p> <p>-----</p> <p>-----</p> <p>-----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p>

현행	개정안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단서(생략) 2. (생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생략)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p>	<p><u>혼인·해의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③-----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등록을 한 자</u>----- ----- ----- 단서(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등록을 한</u>----- ----- 4. (현행과 같음)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u>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u>----- -----<u>감면 신청한</u>----- ----- ----- ----- ----- ----- ----- ----- -----<u>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록</u></p>

현행	개정안
<p>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단서(생략) 2. (생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생략) <p>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p>	<p><u>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③-----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등록을 한 자</u>----- ----- -----, 단서(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등록을 한</u>----- ----- 4. (현행과 같음) <p>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u>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u>----- -----<u>감면 신청한</u>----- ----- ----- ----- ----- ----- -----<u>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록</u></p>

현행	개정안
<p><u>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내지 4.(생략)</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내지 4.(생략)</p> <p>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u>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u></p> <p>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결감한다.</u></p>	<p><u>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u></p> <p>1. 내지 4.(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등록을 한 자</u>----- ----- -----</p> <p>2. 내지 4.(현행과 같음)</p> <p>제9조----- -----<u>교육기본법</u>----- ----- ----- -----</p> <p>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환)를 추정한다.</p> <p>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p><삭제></p>

현행	개정안
<p>연간수입금액=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365/영업기간(일수)</p> <p>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p> <p>제23조의2(서산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산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p>	<p>제23조의2(서산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p> <p>-----</p> <p>-----</p> <p>-----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 및 동조 제5항-----</p> <p>-----</p> <p>-----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p> <p>-----</p> <p>-----</p> <p>-----</p>